

##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김 기 현<sup>+</sup>

(성균관대학교)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경 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 희 선

(성균관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보호서비스, 학대 분류시스템, 보육

+ 주저자

## 1. 서론

최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육아지원정책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 중이다. 이는 동시에 보육 서비스의 품질제고라는 중요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으로 한국 영유아 보육시스템의 근간인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 보육 서비스 질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여 극히 일부 사례만이 담당기관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보다 설사 신고율이 다소 높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학대행위이며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셋째, 어린이집은 대부분 매우 어린 나이의 영유아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부모에게 적절히 알리거나 조사 시에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어렵다. CCTV의 설치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많은 수의 부모들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대한 장시간의 지속적 참여와 관여가 제한적인 것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데에 일조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최근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인데 비해 알려진 것은 놀라울 만큼 적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명확히 세워져있지 않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은 최근의 것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발생 장소에 관한 분석표 중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학대 통계치 외에 관련 통계를 찾기 어렵다. 연구들도 대부분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인식조사나 신고에 대한 태도(예를 들면, 차영숙·문혜련, 2009)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심화된 지식을 제공하기 어렵다.

외국의 문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데이케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여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고 (Schumacher and Carlson, 1999),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존재했던 몇몇 연구들도 데이케어에서 발생하는 성학대(예를 들면, Finkelhor et al., 1988)에 배타적 관심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위탁가정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가정 외에 배치된 아동들에 관심이 주어져 한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이유들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자료가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는 학대날짜, 아동 및 가해자 특성,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정황, 학대로 인한 결과, 학대판정 여부 및 이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여부 및 내용 등 학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구체적 특성과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 조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조치 결과 및 관련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을 분석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린 최종조치 실태와 최종조치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조사했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학대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과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 2. 문헌고찰

###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규모와 현황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중들은 격분했다.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부모 모니터링단 내실화, 처벌 강화(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시설 폐쇄조치 등),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의 대책과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제시된 대책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위반으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보육 담당 공무원이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예방대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일화적인 수준의 증거들이 대부분이고, 실태에 대해서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중 발생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제한했을 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05년 총 65건, 2006년 74건으로 시작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72, 61, 67건으로 답보상태를 보이다 최근 3년 동안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2012년 13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년도).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는 학대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 발

생한 모든 학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종사자인 사례는 이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짐작하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학대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아직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2)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국내외 연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많지 않다. Russell과 Clifford(1987)는 당시 급증하는 데이케어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케어 시설 인증 관리소에 1년 동안 접수된 불만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전체 424개의 불만접수 중 약 16.5%의 사례가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중 42% 정도가 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ndsley와 Bradbard(1987)의 경우에는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4% 정도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데이케어에서 방임을, 약 2%정도의 어머니가 학대를 경험했음을 응답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좀 더 본격적인 연구는 Margolin(1990; 1991)에서 발견되는데 Margolin(1990)은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베이비시터에 의해 신체학대를 경험한 98사례를 분석하였고 가장 흔한 신체학대 행위가 과도한 훈육으로 인해 엉덩이에 멍이 들거나, 맞거나, 발로 차이는 행위였음을 찾아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75%의 학대에서 학대 발생 전 아동과 베이비시터 간에 어떤 형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주로 아동이 다른 아동과 싸우거나 배변 실수, 불복종이나 무례함, 혹은 식사나 잠자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학대를 하는 많은 베이비시터들이 사실상 아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체학대의 23% 가량에서는 체벌에 대한 부모의 암묵적 동의나 묵인도 발견되는데, 베이비시터에 의한 아동학대에 부모가 기여하는 여지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Margolin(1991)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982명의 어머니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다양한 보육 형태 중 개인 가정에 기반한 보육보다는 시설 보육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보다는 많은데 Finkelhor 외(1988)는 미국의 전국규모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성학대 발생률을 아동인구 만 명당 5.5명으로 추정한 적이 있으며, Faller(1988)는 어린이집 성학대의 특성으로 다수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및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 동반됨을, Kelly 외(1993)는 높은 여성 학대행위자 비율과 낮은 피해연령, 심각한 후유증을 들고 있다. 연구결과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만지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 성학대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Finkelhor et al., 1988; Bybee and Mowbray, 1993; Waterman et al., 1993).

국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유아교육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내 아동학대에 관한 소수의 연구(정채옥, 2002; 차영숙·문혜련, 2009)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도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한미현, 2013), 보육 및 유아교사 신고의도와 신고행동간 관계에 관한 연구(김현옥, 2013)를 제외하고는 여타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차영숙과 문혜련(2009)은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다녀온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한 결과, 신체적 학대에서는 때밀고 당기기, 치거나 때리기, 벌주기, 정서적 학대에서는 무시하기, 강제로 시키기, 교사의 부재, 무관심, 방임에서는 제외시키기, 교사의 부재, 무관심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관찰한 아동학대로 보고하고 있다. 김현옥(2013)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행동에는 보육교사의 신고의도, 학대문제의 심각성, 아동의 취약성,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신고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수정과 이재연(2013)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이 유아교사의 신고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와 현황, 아동들이 경험하는 학대의 본질 및 특성,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 3) 아동보호서비스 학대 사례기록(case recordings)에 바탕한 아동학대 특성 분석

아동학대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아동학대 경험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인들의 회고적 자기보고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미국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어왔다(Hardt and Rutter, 2004 리뷰참고). 예를 들어, Williams(1994)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학대판정을 받은 129명의 아동을 약 17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의 40% 정도의 여성이 기록에 적혀있는 구체적인 학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Widom 외의 일련의 연구도(Widom and Morris, 1997; Widom and Shepard, 1996; Widom et al., 2005) 유사한데, 성학대에서는 33%에서 45% 정도가 보고하지 않으며 신체학대에서도 사용된 학대 정의에 따라 8%에서 40%정도의 참여자가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한국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웠으나, 미국 연구에 기반해 볼 때, 전반적으로 성인들의 아동학대 회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성인들 3분의 1 가량이 보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측정으로서 성인기 회고적 자기보고의 타당도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듯이 보인다(Hardt and Rutter, 2004).

청소년들의 아동기 학대 보고는 성인기 자기보고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면 인터뷰(McGee et al., 1995; Fergusson et al., 2000), 전화 인터뷰(Hamby and Finkelhor, 2000; Kilpatrick et al., 2000), 설문지(Bernstein et al., 2003), 컴퓨터에 직접 기입하는 형식(Black and Ponirakis, 2000)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아동보호서비스 학대 판정 및 기록과 대조를 해보았다. 예를 들면, McGee 외(McGee et al., 1995)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가 오픈되어 있는 11세에서 17세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인터뷰와 사례 기록에 나타난 학대 여부의 일치율은 평균 75% 정도로 성학대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 반면, 방임은 약 60%로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불일치는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학대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도 성학대의 2%, 신체학대의 19% 정도가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중인 71명의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하고 아동보호서비스 기록과 비교한 Winegar와 Lipschitz(1999)는 성학대의 14%, 신체학대의 17% 정도가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회고는 성인기 회고보다는 정확하지만 아동학대 정보로서 타당성은 여전히 문제적이라 하겠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 정보를 좀 더 정확히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경험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 이는 미국에서 대규모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는 아동학대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쓰여 온 방식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지식이 이런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학대 경험 유/무나 학대 유형과 같은 범주적 접근은 '학대'라는 레이블 아래 구체적으로 아동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지 학대 경험의 본질과 학대 판정 아래 사실상 세부적 특성과 심각성 정도에는 많은 이질성과 다양성이 있어 최근 비판적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예를 들면, Trickett et al., 2009; Mennen et al., 2010; Trickett et al., 2011).

구체적으로, 최근 새로운 연구들은 아동학대의 경험 유무나 학대 유형(즉, 신체, 성, 정서 학대 및 방임)보다는 학대 발생의 중복이나 누적 이 아동발달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Lau et al., 2005; Finkelhor et al., 2007). 같은 맥락에서, Trickett 외(2001)의 연구는 성학대의 구체적 특성, 즉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 구체적 학대 행위, 강압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판정받은 성폭력이라는 범주 하에 사실상 이질적인 3개의 집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각각의 집단은 아동의 단기 및 장기 발달 산물들과 서로 다른 인과관계 구조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Trickett et al., 2011). 학대의 유형, 발생 시기, 빈도, 심각성, 지속 기간도 아동의 발달 산물에 서로 다른 함의를 갖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Litrownik et al., 2005). 이는 경험한 학대의 구체적 행위 유형, 심각성, 빈도, 기간과 같이 학대 경험의 구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아동학대에 있어 한가지 학대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이고, 많은 학대 아동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복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DeBellis, 2001; Saunders, 2003; Litrownik et al., 2005)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한국 아동학대 연구 경향 분석에서 송민경(2013)은 국내 아동학대 연구의 60% 가까이가 피해 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서베이 조사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경험에 대해 회고적 자기보고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동학대를 규정하는데 있어 자기보고 방식의 낮은 타당도를 고려한다면 한국 아동학대 연구가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한국 연구는 없으며 아동학대 연구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보고서에도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대의 유형이나 빈도, 발생장소 이외의 심화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김세원과 이봉주

(2010)가 일반아동들의 자기보고에 기반하여 학대경험을 세 집단(즉, 거의 경험하지 않은 집단, 신체+정서+방임, 신체+정서)으로 유형화 한 적이 있으나, 송민경(2013)의 지적처럼, 대부분 포괄적인 '아동학대'라는 범주를 사용하여 학대의 영향이나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많은 아동학대 연구가 있지만 학대라는 레이블 아래 아동들이 경험하는 학대의 본질이나 하위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학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학대 사례 기록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추출하여 학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최근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사례기록에서 학대 특성을 추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및 학대행위자 특성,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아동보호서비스 최종조치 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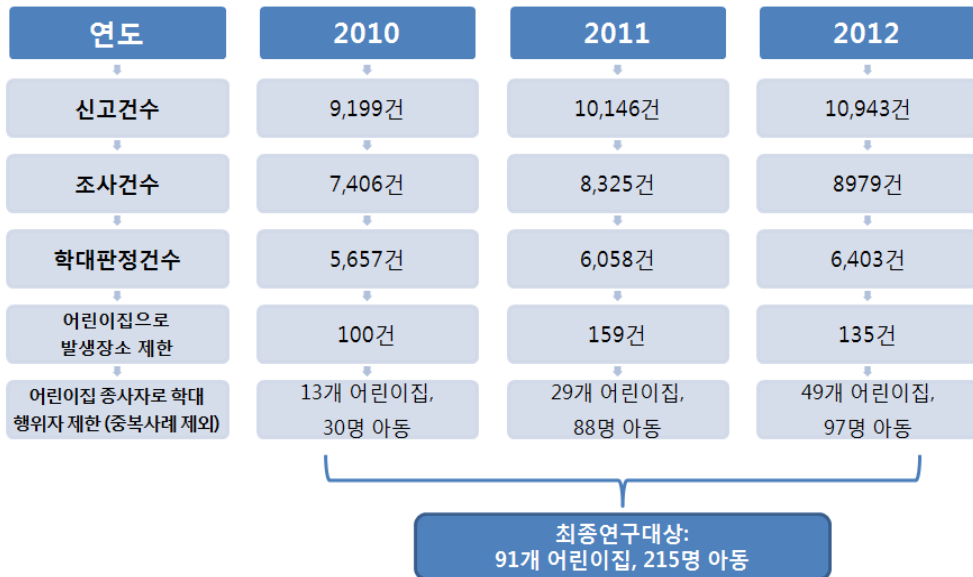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되고, 조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을 하거나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학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지자체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알려진 바도 거의 없다. 외국 문헌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결정에는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의 특성 및 학대 행위의 특성 그리고 제도적 요인과 조사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다(Zuravin et al., 1995; English et al., 2002; Trocme et al., 2009). 그 중 가장 빈번히 연구되는 것은 학대 유형과 신고자 유형인데 Zuravin 외(1995)는 다른 유형보다 신체학대가, 그리고 비전문가보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더 학대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Wolock et al., 2001). 마지막으로, 중복학대 여부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English et al., 2002; Trocme et al., 2009). 본 연구는 학대 사례 기록에서 가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최종조치 요인을 탐색하였다. Foster 외(2010)의 모델에 따라, 학대 유형과 심각성, 신고자 유형, 중복학대 여부를 중심으로 최종조치 관련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서비스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전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지역도 함께 고려했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462개의 어

린이집(해당 아동 수 988명)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91개 어린이집, 215명의 아동에 대해 학대로 판정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정한 전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례 91개(피해아동 수 215명)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학대사례에 대한 연구대상 선정 과정은 아래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

또한 학대 판정에 따른 사례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잠재 위험사례(즉,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나 일반사례(즉,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로 판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해 최근 3년간의 학대사례 91개와 함께 잠재위험사례 59개, 일반사례 312개 전수도 포함하여 총 462개 어린이집에서 988명의 아동 사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 관련 정보가 추출되었다.

##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 시스템 개발 방법

본 연구는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즉, 일련의 절차를 이용하여 문서나 텍스트를 양적 내용으로 전환하여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는 방식; Rubin and Babbie, 2005)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아동학대 전산 시스템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파일에서 아동학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체 코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코딩시스템은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스템 내 학대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학대 사례기록 추출 도구> (Maltreatment Case



Record Abstraction Instrument [MCRAI], Trickett et al., 2009; Mennen et al., 2010)를 바탕으로 번역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성에 맞는 수정,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MCRAI는 Barnett 외(1993)가 미국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은 대규모 아동학대 중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학대분류시스템-수정본(Modified Maltreatment Classification System, [MMCS])을 기본으로 많은 아동학대연구자들과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기록을 세부사항까지 추출하여 아동들의 학대경험을 자세히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MCRAI의 기본적 구조는 학대를 범주와 하위범주, 그 하위범주로 계속 나누어 나아가도록 되어있고 이외에도 학대행위자, 빈도, 지속기간, 행위의 결과 등 학대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MCRAI를 바탕으로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맞는 코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 패널과 아동학대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즉, 소아정신과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학 교수, 보육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기관 중간 관리자)을 구성하였다. MCRAI를 미국 아동학대 연구에서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책임연구자가 MCRAI를 번역한 후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번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책임 연구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번역된 도구를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어린이집 맥락에 맞지 않는 항목들(예를 들면, 교육방임)은 제거되었고 필요한 항목들(예를 들면, 최종조치 중 고소고발 여부, 학대행위자 유형 중 보육교직원 등)은 추가되었다. 수정을 바탕으로 5인의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코딩 시스템을 검토하였고 자문을 받아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중 무작위로 추출된 20여 사례에 대해 코딩 시스템을 적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코딩 시스템을 확정지었다.

### 3) 코딩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사례 기록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내용, 현장 조사내용, 상담원 소견, 최종조치에 관한 평균 2-3페이지 분량의 사례개요서를 작성하였고 이 개요서를 바탕으로 집중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3명이 개발된 코딩시스템을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 중 2명이 대학원생 데이터 추출자를 감독, 훈련하고, 데이터 추출 과정을 점검했다. 트레이닝은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저자들과 동일 사례 추출을 통해 평가자간 일치도가 90%에 이를 때까지 밀착 트레이닝이 지속되었다. 추출된 데이터는 사례별로 개요서와 다시 대조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집단 결정을 내리거나 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시스템에 다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찾아 비교 대조함으로써 정보의 정

확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결측치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처음 20개의 무작위로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두 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같은 사례를 추출하였고, 총 96개의 항목에 대해 평균 kappa는 .94였다.

#### 4. 연구결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력되어 있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학대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총 462곳이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2010년 13곳, 2011년 30곳, 2012년 49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조사 대비 학대 판정률은 매년 29.5%, 24.4%, 16.4%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3년간 총 462개 어린이집에서 988명의 아동이 학대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91개 어린이집에서 215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학대 판정률 19.7%를 보여주었다.

<표 1>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

	2010		2011		2012		합계	
	어린이집 (개)	아동 (명)	어린이집 (개)	아동 (명)	어린이집 (개)	아동 (명)	어린이집 (개)	아동 (명)
학대사례	13	30	29	88	49	97	91	215
잠재위험 사례	4	4	16	111	39	70	59	185
일반 사례	27	30	74	189	211	369	312	588
합계	44	64	119	388	299	536	462	988
학대 판정률	29.5%	46.9%	24.4%	22.7%	16.4%	18.1%	19.7%	21.8%

지난 3년간 학대 판정을 받은 91개 어린이집, 215명의 아동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에 요약하였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고(평균=3.4세 표준편차=1.6세) 남아와 여아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해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였고 이들은 전체의 88.3%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학대사례의 17.6%에 불과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대부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 부모에 의한 신고가 전체 학대사례의 63.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9명(9.9%), 현직 보육교직원 4명(4.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가 각 1명(3.3%)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비신고 의무자는 부모 외에 전직 보육 교직원 4명(4.4%),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명(2.2%), 피해아동 외 다른 원생 및 보호자 2명(2.2%)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형을 보면 국공립은 전체 학대 사례의 5.5%인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5.3% 내외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을 살펴보면(〈표 3〉),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중복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순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신체학대가 총 50사례로 전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의 54.9%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였는데, 총 19개 사례로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일어난 경우가 10개(52.6%)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복학대 사례에 모두 어떤 조합으로든 신체학대가 연루되어 있었다. 종합해보면, 사실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91개 사례 중 67개 사례(73.6%)에 단독이나 중복의 형태로 신체학대가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어린이집 특성

	수 (명)	백분율(%)	평균(세)	표준편차
피해아동 성별				
남	119	55.3		
여	96	44.7		
피해아동 연령			3.4	1.6
가해자 성별				
남	12	12.6		
여	83	87.4		
가해자 연령			39.6	10.3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대표자	1	1.1		
원장	32	33.6		
이사	1	1.1		
보육교직원	52	54.7		
운전기사	2	2.1		
기타	6	6.3		
파악못함	1	1.1		
신고자 유형				
신고 의무자*	16	17.6		
비신고의무자**	75	82.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	5.5		
민간	53	58.2		
가정	31	34.1		
기타	2	2.2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직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함.

\*\*비신고의무자는 부모, 전직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피해아동 외 다른 원생 및 보호자, 친인척, 낯선 사람, 익명 등을 포함함.

&lt;표 3&gt;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대 특성

	수 (명)	백분율 (%)
학대 유형		
신체학대	50	54.9
정서학대	13	14.3
성학대	6	6.6
방임	3	3.3
중복학대	19	20.9
신체학대 + 정서학대	10	11.0
신체학대 + 방임	4	4.4
정서학대 + 방임	2	2.2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3	3.3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세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네 가지 학대 유형별로 나누고, 각 학대 유형을 다시 하위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학대 내용과 빈도 등 구체적인 학대 사례를 분석하였다(<표 4>~<표 7>). 먼저 신체학대를 보면(<표 4>),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가 관여된 사례를 포함하여 총 67개 사례에 대해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체학대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행위는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물기였으며(60%), 다음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신체학대 행위를 도구 사용 여부와 신체 손상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표 4-1>), 신체학대 사례 67개 중 19개(28.4%)의 사례에서 도구가 사용되었고 67.2%에서 신체손상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구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나 각종 막대기류가 많았고 신체손상은 상처나 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lt;표 4&gt;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 유형 (중복포함)

유형	어린이집 신체학대 사례 예시	빈도 (건)	백분율 (%)
흔들기/ 잡아당기기/밀치기	만3세 아동이 친구와 싸운다하여 뺨을 때리고 억지로 한팔 끌고 가서 4-5차례 양쪽 어깨 흔들며 뒤로 확 젖힘	10	12.5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 물기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화장실에서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에 부딪히게 함	48	60.0
	만2세 아동이 다른 아동 깨물어 피 냈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두차례 때리고 손을 두차례 깨물며 볼을 꼬집음		
발로차기/때리기	복도에서 심하게 장난쳤다는 이유로 아동의 옆구리와 허리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림	2	2.5
도구로 때리기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손에 물건 쥌 채 놓으려고 하지 않아 파리채로 아동의 뺨을 두 대 때림	18	22.4

	만 6세 아동이 '가나다라'를 모른다는 이유로 가위와 연필로 배를 10번 정도 찌름		
물건 던지기	아동에게 던진 소고가 후두부에 맞아 뇌진탕 진단 받음	1	1.3
기 타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축대를 들이받아 해를 입힘	1	1.3
합 계		80*	100.0

\*신체학대 내 학대행위의 중복을 포함하기에 신체학대 유형의 합계(80)가 신체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총 개수(67개)를 초과함.

<표 4-1> 신체학대 특성 - 도구사용 및 신체 손상

	빈도	백분율 (%)
도구 사용 여부		
도구사용 안함	48	71.6
도구사용 함	19	28.4
긴 자	2	3.0
각종 막대기*	10	14.9
회초리	1	1.5
소고	1	1.5
숨없는 면봉	1	1.5
연필, 가위, 압편	2	3.0
휴대폰, 동화책	1	1.5
기타 교구	1	1.5
신체손상 여부		
손상 없음	22	32.8
손상 있음	45	67.2
상처나 멍이 들	42	62.7
뼈 상해 및 입원	3	4.5
합 계	67	100.0

\*과리채,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 글루건 심, 뽕망치, 포장지 심 등

최근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91개 사례 중 9개 어린이집에서 성학대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학대 특성은 <표 5>에 요약하였다. 9개의 성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5개, 55.6%)로 나타났다.

<표 5>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성학대 유형 (중복포함)

유형*	어린이집 성학대 사례 예시	빈도 (건)	백분율 (%)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짐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불을 끄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졌다고 함	5	55.6
아동의 입을 행위자의 생식기에 접촉시킴	이사장이 성기를 아동의 입에 넣는 행동을 했다고 아동이 보고했다 함	1	11.1
손이나 도구를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넣음	아동에 의하면, 봉고선생님이 개구리가 들어갔으니 빼내야 한다고 하며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질 속을 찔렀다고 함	1	11.1
기 타	성기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으나, 아동의 해당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함	2	22.2
합 계		9	100.0

\*코딩시스템에는 ‘아동에게 오랫동안 키스함’, ‘성인의 자위를 돕거나 보게 함’, ‘서로 자위를 함’, ‘행위자의 입을 아동의 생식기에 접촉시킴’, ‘포르노에 노출시킴’, ‘아동간 성적행위 강요’도 포함 되어 있었으나 분석결과 빈도가 “0”으로 나와 결과표에서 제외함.

정서학대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정의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서학대 유형 분류 중 하나인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Abuse and Children: 1995)의 유형화를 따라 MCRAI 항목들을 범주화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정서학대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는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로 전체 26개 정서학대 사례 중 각각 33.3%, 35.1%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었다. 반면, 아동을 착취하거나 타락시키는 정서학대의 행위는 어린이집에선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 유형 (중복포함)

APSAC* 유형화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사례의 예	빈도	%	빈도	%
거부 또는 경멸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함”	매운 음식 먹을 때 물 마시지 못하게 하며, 밥 먹는 속도 느리면 연령 낮은 반으로 보내 아동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	19	33.3	20	41.6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을 함”	야간에 잠을 자는 아동들에게 “니 애비 닳아 말을 안 듣니”, “애비 없는 자식”, “야이, 새끼야”라는 말을 함	4	7.0		
공포감 조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20	35.1	21	43.8
	“아동을 내쫓거나	학대 피해 아동의 같은 반 아동들을	2	3.5		

	버리겠다고 위협함”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행위자가 아동들을 집어서 밖에 버리겠다고 위협한다고 함				
	“아동에게 교사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킴”	원장이 아동을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것을 담당교사가 제재하자 원장이 담당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보고 아동이 울게 됨	2	3.5		
	“아동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교사간 싸움 외)에 노출되었음”	학부모가 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 등이 오가는 행동이 다른 원아들에게 목격됨	3	5.3		
<b>고립 시키기</b>	“아동을 가두어놓음”	아동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불 꺼진 화장실이나 방에 가둠	7	12.3	7	14.6
<b>합 계</b>			57	100.0	48	100.0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and children)이 사용하는 정서학대 세부 범주에 따른 정서학대 유형분류임. APSAC 분류에는 ‘착취 및 타락시키기’와 코딩 시스템에 이에 상응하는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함’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분석 결과 빈도수가 “0”으로 나와 결과표에서 제외함.

방임에 관한 세부적인 학대 내용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방임은 총 9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행위는 감독 방임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거나 부적절한 대체 환경에 아동을 방치한 감독 방임이 전체 사례의 5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방임 외 하위유형은 4개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만 발견되어 다양한 방임 하위 유형 중 감독 방임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방임의 대표적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유형의 학대를 발생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표 8>), 신체학대의 경우 많은 사례가 한 번의 사건에 그치는 빈도가 높았으나(68.7%),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는 정확한 빈도가 파악되지 않거나 일회성이 아닌 경우도 3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방임 유형 (중복포함)

Knuts on et al. (2005)	방임 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사례의 예	빈도	%	빈도	%
<b>돌봄 방임</b>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음”	아동들에게 밥을 잘 주지 않으며 단무지만 주기도 하며, 식단표를 잘 지키지 않음	3	9.6	4	22.2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음”	간식이 주로 바나나와 과자이며, 간식이 탄수화물 위주로 이로 인해 몇몇 아동의 아토피 증세가 심함	2	6.5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면에서 적절함”	상한 음식(썩은 고구마)을 아동에게 제공	3	9.6		
	<b>환경</b>	“어린이집 아동의	낮잠 자는 시간 전까지 교구장을	2	6.5	4	22.2

방임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임”	아동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입구에 세로로 세워놓아 아동들을 위험상황에 방치시킴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기간 방치되어 있음	2	6.5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가 되어있으며 위험요소가 없음”	어린이집 내 뽀족한 모서리가 많아, 이로 인해 아동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함	2	6.5			
	“아동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음”	아동들에게 곰팡이 핀 장난감이 제공되고 있으며, 원내 수족구에 걸린 아동을 등원시켜 다른 아동들이 전염됨	2	6.5			
의료 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음”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관리소홀로 아동들 아토피와 습진 등 피부병이 생겼으나 적절한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병이 더 심각해짐	1	3.2	1	5.6	
감독 방임	감독 방임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었음”	등원 시 교사가 아동의 하차를 확인하지 못해 만4세 아동이 25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약 6시간 동안 갇혀 아무 것도 먹지 못함	9	29.0	9	50.0
	감독 방임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두었음”	교사가 아동들 재운 뒤 30분 이상 자리 비웠고 이때 만 2세 아동이 깨어나 교사 찾으며 2-30분 정도 교실 돌다가 소변을 지림	5	16.1		
합계			31	100.0	18	100.0	

<표 8>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대 유형별 발생 빈도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수 (건)	비율 (%)	수 (건)	수 (건)	수 (건)	수 (건)	수 (건)	수 (건)
한 번	46	68.7	1	16.7	9	32.1	3	25.0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	12	17.9	2	33.3	9	32.1	1	8.3
1개월에 한 번			1	16.7				
1개월에 몇 번							1	8.3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몇 번					5	17.9	3	25.0
매 일	2	3.0			2	7.1	1	8.3
기 타								
모름 (파악 안 됨)	7	10.5	2	33.3	3	10.7	3	25.0
합계	67	100.0	6	100.0	28	100.0	12	100.0



다음으로 <표 9>는 지난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린 최종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고 있다. 학대 판정을 받은 전체 91개 어린이집 대부분(94.5%)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최종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피해아동의 83.5%, 학대 행위자의 65.3%, 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67%가 최종조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는 타 어린이집 전원이나 어린이집 퇴원이 각각 25건, 43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조치였으며, 이외 상담 15건, 심리검사 3건, 치료 8건 등 상담 치료가 피해아동에게 두 번째로 빈번하게 내려진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는 고소고발과 해임이 각각 31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9건), 교육(6건), 자격정지(4건)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최종조치는 모니터링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중지와 반환이 각각 13건과 11건, 그 뒤로 폐쇄(10건), 교육(6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나 취소(5건),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 제외(3건)가 뒤를 이었다.

<표 9>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조치 분석

대상별 최종조치 여부	수 (건)	비율 (%)
최종조치 있음 (모든 대상)	86	94.5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76	83.5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62	65.3
어린이집에 대한 최종조치***	61	67.0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 타 어린이집 전원, 어린이집 퇴원, 가정 지원 및 모니터링 권고 등을 포함함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는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 벌금, 과태료, 해임, 교육 등을 포함함

\*\*\*어린이집에 대한 최종조치는 고소고발, 폐쇄,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 제외, 보조금 반환 및 중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벌금, 경고, 모니터링, 및 교육 등을 포함함

마지막으로, <표 10>은 각 대상별 최종조치 수준을 구분하고 '강력한 최종조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강력한 최종조치는 피해아동의 경우 상담 및 치료 연계, 학대 행위자의 경우는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 어린이집의 경우는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내려진 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상별 구분 없이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강력한 최종조치(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중 한 대상에게라도 강력한 조치가 내려짐)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피해아동( $x^2=43.40$ ), 학대 행위자( $x^2=123.19$ ), 어린이집( $x^2=53.25$ )과 전체 사례( $x^2=93.01$ )에 대한 관련 모형 적합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영향요인은 각 대상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종조치 모형에서는 정서학대 유무와 스크리닝 점수가 강력한 조치와 관

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와 스크리닝 점수의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하면 즉, 정서학대가 발생하거나 스크리닝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승산은 각각 5.16, 1.3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 최종조치 모형에서는 피해아동의 경우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강력한 조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 성별과 지역이 한 단위 감소하면, 즉 남아이거나 지역이 서울 및 경기권이 아닐 경우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승산은 각각 3.13, 3.33만큼 증가하였다. 신고자가 신고의무자이거나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 성학대가 발생했을 시, 학대 행위자에게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승산은 각각 4.07, 22.69, 11.25, 9.35만큼 증가하였다.

<표 10> 최종조치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

예측 변인	전 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아동 성별	-3.65 (.28)	.69	-1.36 (.36)	.87	-1.15* (.56)	.32	.20 (.48)	1.22
지역 (서울·경기도)	-3.07 (.27)	.74	-3.06 (.36)	.74	-1.22* (.53)	.30	-1.32** (.48)	.27
신고자 신고의무자격	.65+ (.39)	1.91	.20 (.51)	1.22	1.40* (.63)	4.07	.27 (.66)	1.31
신체학대	1.19*** (.34)	3.28	.91 (.58)	2.48	3.12*** (.57)	22.69	2.49*** (.56)	12.05
정서학대	1.15* (.48)	3.16	1.64* (.77)	5.16	2.42** (.76)	11.25	1.62* (.78)	5.06
방임	.10 (.72)	1.10	-2.04 (18928.14)	1.34	-.57 (1.11)	.57	.68 (.99)	1.98
성학대	21.89 (15227.56)	3.21	22.15 (19772.86)	4.14	2.24+ (1.25)	9.35	-19.80 (17390.96)	.00
중복학대 유무	-5.24 (.40)	.59	-9.44 (.61)	.39	-.15 (.74)	.86	-1.03 (.78)	.36
스크리닝 점수	.25** (.09)	1.28	.26* (.12)	1.30	.25+ (.15)	1.29	.07 (.15)	1.07
신고아동 수	.07** (.02)	1.07	.04 (.03)	1.04	.10** (.03)	1.11	.03 (.02)	1.03
상수항	-1.99 (.30)	.14	-1.97 (.39)	.14	-3.47*** (.57)	.03	-2.51*** (.49)	.08
X <sup>2</sup> (df)	93.01(10)***		43.40(10)***		123.19(10)***		53.25(10)***	
-2LL	366.65		222.08		126.54		141.59	

주1. +; p<.10, \*; p<.05, \*\*, p<.01. \*\*\*, p<.001

주2. 종속변수의 준거 집단은 '강한 조치'임

또한 스크리닝 점수와 신고된 아동 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학대 행위자에게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승산 역시 1.29, 1.1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아동이 남아이거나 학대발생 어린이집의 위치가 비 서울 및 경기권일 경우,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의무자이거나 방임을 제외한 학대유형이 발생할 경우, 스크리닝 점수가 높거나 신고된 아동 수가 많을수록 학대 행위자에게 강력한 수준의 최종조치가 내려질 승산은 높아졌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신체 및 정서학대 변인이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지역이 서울 및 경기권이 아닐 경우, 신체학대 혹은 정서학대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승산이 증가하였다. 전체 사례의 경우엔, 신체 및 정서학대 유무와 스크리닝 점수, 신고 아동 수가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지는 데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학대 혹은 정서학대로 판정이 나거나 스크리닝 점수와 신고된 아동 수가 증가할 경우 전체 사례에서 강력한 최종조치가 내려질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가 공공 보육 지원 정책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영유아 보육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구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를 위해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국가 아동학대 전산 시스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기록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학대 특성 및 관련 정보와 최종조치 결과를 직접 추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개 어린이집)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형별 구체적 학대 특성 및 최종조치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했다.

먼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91개 어린이집에서 215명 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42,52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보건복지부, 2012)되는데 전체 어린이집 수에 비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얻은 3년간 91개라는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공보육 시스템에서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91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3년간 전국 91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개 어린이집으로 시작해 2011년 29개, 2012년 49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증가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지난 3년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70%의 증가를 보였지만 일반사례는 681%의 증가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학대로 신고되었으나 조사결과 학대

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일반사례에서 지난 3년간 증가폭은 학대사례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연간 증가는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증가이기보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학대의 발견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며 공공보육 정책의 도입 초기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내린 학대 판정율은 평균 19.7%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판정률은 2010년 71.3%, 2011년 72.8%, 2012년 76.4%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2012; 2013). 유사한 아동학대 데이터 시스템에 기반한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 아동보호기관의 학대 판정률은 18.5%를 보여준다(US DHHS, 2013).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전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학대 판정률이 훨씬 높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의 비율이 훨씬 높고(17.6% vs. 82.4%), 비신고자 중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신고 비율(63.7%)이 매우 높다. 한국은 전체 아동학대를 보았을 때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 비율이 2012년 전체 학대의 63.1%로 미국보다 높지만, 비신고의무자 중 부모에 의한 신고 비율은 2012년 16%를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부모 신고 비율 63.7%는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실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강한 조치를 내릴 확률이 높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더 정확함을 보여준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높이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꾸준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함을 재확인 해준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구체적 학대 특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유형별 동질성, 즉 압도적으로 높은 신체학대 비율이다.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 지난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유형별 특성을 보면 신체학대 55%, 정서학대 14%, 성학대 7%, 방임 3%, 중복학대 21%로 나타났다. 더욱이 단독유형으로서 신체학대 비율 55%와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와 관련된 학대를 감안하면 전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중 73.6%의 사례(67개)가 실질적으로 신체학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신체학대율 28.8%나 유사한 데이터 시스템인 미국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신체학대 비율 17.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에서 많은 학대 행위자들은 훈육이나 체벌의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체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소아과 협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체벌 금지 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회의 체벌 금지 이유는 체벌이 쉽게 신체 학대로 발전되기 쉬우며 체벌의 행동수정 효과에 대한 회의, 즉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들

(Gershoff, 2002)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적 사회문화 맥락에서 체벌의 효과성과 체벌과 신체학대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체벌 금지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학대와 방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성학대의 경우 만지기가 가장 빈번한 행위였는데 이는 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임의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13% 정도만이 방임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중 방임의 비율은 단독 유형으로서 전체 학대의 26.8%, 중복학대 중 방임과 관련된 사례를 포함했을 때 전체 학대의 44.5%를 차지하고 있어, 학대 피해아동의 75% 이상이 방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미국 아동보호기관의 데이터와 대조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방임 비율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환경 방임보다는 감독 방임이 더 빈번했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급식에 관해서는 별도의 어린이집 인종 평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감독 방임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한국 아동보호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원래 학대 발생에 대한 조사와 판정뿐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서비스이다. 따라서 부모가 기관의 어떠한 노력에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정이 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게 될 때에도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Marther et al., 2007). 이에 반해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하고 신고 조사 시스템만 강조된 형태를 보여준다(이봉주, 2005; 김기현, 2010). 서비스 제공보다 신고 조사 기능이 강조된 시스템 하에서 처벌보다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방임 부분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아동복지법의 보호자 규정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가정 내 (in-home)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을 주로 다루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와는 달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도 깊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달리 가족기능 강화 혹은 가족지지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관건이기 어렵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이질적인 측면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아동 학대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야 할 타당성과 아동학대 관련 보호자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학대의 심각성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데, 외국 연구의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나타나는 학대증후 수준,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등 다양하게 조작화하고 있다(Litrownik et al., 2005). 다양한 조작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학대 유형 측면에서는 동질적이었지만 심각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도구를 사용한 사례는 전체 신체학대의 28.4%, 신체 손상이 있었던 사례는 전체 신체학대의 67.2%였고, 학대 빈도 측면에서 볼 때 신체학대의 상당수는 한번 있었던 일이었지만 정서학대나 방임의 경우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매우 경미해 보이는 학대도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고 학대가 처음에는 경미했으나 점점 심각한 학대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미한” 학대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하면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학대의 심각성은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대의 심각성을 계량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난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더욱이 2013년 12월 통과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보호자에 의한 학대에 해당되어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이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되는 등 비교적 경미한 학대가 신고에서 누락될 우려(강동욱, 2014)도 대두되고 있다.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정의와 수준, 진행 과정,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종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해지거나, 세 유형 중 한 개 이상의 유형에 대해 중복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최종조치 대상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행위자나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는 유사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같이 크지 않았다. 즉, 일반가정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지속관찰 77.8%, 아동과의 분리 5.7%, 고소고발 6.6%를 보여주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고소고발 50%, 해임 33.9% 등 대부분 강력한 처벌 위주인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성격이 여러모로 매우 다름을 보여주어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조치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최종조치에서는 연구변수에 따른 차이를 많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학대 판정 외에는 어린이집의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여부에 특정 결정요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피해아동이나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조치에서는 다양한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신고 아동 수나 스크리닝 점수 등 아동학대 특성의 심각성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학대 여부가 최종조치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중복학대 여부는 외국의 경우 중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방임 비율이 낮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이 원인이라 추정되나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기록은 아동 학대에 관한 기초적이고 매우 귀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아동학대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최근 개발된 아동학대 사례 기록 데이터 추출 시스템으로 사례기록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마련되었고 본 연구는 이를 한국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시스템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다. 학대에 대한 자기보고나 총괄적인 학대 코드가 아동학대 경험의 정확한 측정으로서 부정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의 접근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외에도 다양한 아동학대에 적용되어 아동학대에 대

한 심도있고 정확한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확한 발생률을 추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학대만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과 더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전국 어린이집의 확률 표본을 통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정확히 추정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씌으로써 최종조치 결정모형에서 학대 행위자 및 아동관련 요인들이 개략적이었다. 학대의 고의성과 훈육 행위의 합리성에 관한 변수들이 더 포함되면 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학대 판정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최종조치를 내리는 현황과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잠재위험 사례의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아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체벌에 대한 허용적 문화를 언급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나 전문성에 대한 변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으나 학대의 원인으로서 학대 행위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근무환경(양육환경)은 잘 알려져 있다. 보육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역할이 매개되어야 하며 부모 및 지원기관에서 교사 대상의 직접적 지원체계 수립이 보완되어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이미 제시된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과 함께 임금 체계 구체화, 공간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조사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피조사기관으로서의 관계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아동학대 문제를 놓고 볼 때 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처럼 중요한 파트너십도 드물다.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개입이 종결된 후 아동을 지역사회에 원활히 복귀시키는 데에도 어린이집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동욱, 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제 49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정기학술세미나, 2014.05, 33-55.
- 김기현, 2010, “개입적 아동복지정책: 학대 및 방임 아동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1-156.
- 김세원·이봉주, 2010,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7(1): 173-189.
- 김수정·이재연, 2013,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과 권리』, 17(2): 205-228.
- 김현욱, 201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신념 관련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1: 5-32.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민경, 2013,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5): 213-234.
- 이봉주, 200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과 모델 -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05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45-66.
- 정채욱, 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185-209.
- 차영숙·문혜련, 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영유아보육학』, 58: 61-80.
- 한미현, 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보육진흥원 보고서 (미간행).
-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1995, *Guidelines for Psychosocial Evaluation of Suspected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L: Author.
- Barnett, D., Manly, J. T., and Cicchetti, D., 1993, “Defining child maltreatment: The interface between policy and research”, *Child Abuse,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8: 7-73.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Stokes, J., Handelsman, L., Medrano, M., Desmond, D., and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7: 169-190.
- Black, M. M., and Ponirakis, A., 2000, “Computer-administered interviews with children about maltrea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7): 682-695.
- Bybee, D., and Mowbray, C. T., 1993, “An analysis of allegations of sexual abuse in a multi-victim day-care center case”, *Child Abuse and Neglect*, 17(6): 767-783.
- DeBellis, M. D., 2001,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maltreated children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at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539-564.
- Endsley, R. C., and Bradbard, M. R., 1987, “Dissatisfaction with previous child care among current users of proprietary center care”, *Child and Youth Care Quarterly*, 16(4): 249-262.



- English, D. J., Marshall, D. B., Coghlan, L., Brumme, S., and Orme, M., 2002,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substantiation decision in Washington State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 and Youth Services Review*, 24: 817-851.
- Faller, K. C., 1988, *Child Sexual Abuse: An Interdisciplinary Manual for Diagnosis, Case Management, and Treatment*, US: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rgusson, D. M., Horwood, L. J., and Woodward, L. J., 2000, "The stability of child abuse report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porting behavior of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30: 529-544.
- Finkelhor, D., Ormrod, R. O., and Turen, H. A., 2007, "Re-victimization patterns in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Child Abuse and Neglect*, 31: 479-502.
- Finkelhor, D., Williams, L. M., Burns, N., and Kalinowski, M., 1988, *Sexual Abuse in Day Care*, US: Sage Publications.
- Foster, R. E., Stone, F. P., Linkh, D. J., Besetsn, L. K., Collins, P. S., Saha, T., Thomsen, C. J., Rabenhorst, M. M., and Milner, J. S., 2010, "Substantiation of spouse and child maltreatment reports as a function of referral source and maltreatment type", *Military Medicine*, 175: 560-566.
-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 Hamby, S. L., and Finkelhor, D., 2000,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Recommendations for assessment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7): 829-841.
- Hardt, J., and Rutter, M., 2004, "Validity of adult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2): 260-273.
- Kelly, S. J., Brant, R., and Waterman, J., 1993, "Sexual abuse of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Child Abuse and Neglect*, 17(1): 71-89.
- Kilpatrick, D. G., Acierno, R., Saunders, B., Resnick, H. S., Best, C. L., and Schnurr, P. P., 2000,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1): 19-30.
- Knutson, J. F., DeGarmo, D., Koepple, G., and Reid, J. B., 2005, "Care neglect, supervisory neglect, and harsh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ggress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Maltreatment*, 10: 92-107.
- Lau, A. S., Leeb, R. T., English, D., Graham, J. C., Briggs, E. C., Brody, K. E., and Marshall, J., 2005, "What's in a name? A comparison of methods for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of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29: 533-551.
- Litrownik, A. J., Lau, A., English, D. J., Briggs, E., Newton, R. R., Romney, S., and Dubowitz, H., 2005, "Measur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29(5): 553-573.
- Margolin, L., 1990, "Child Abuse by baby-sitters: An ecological-interacti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95-105.

- Margolin, L., 1991, "Abuse and neglect in nonparental child care: A risk assess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694-704.
- Marther, J. H., Lager, P. B., and Harris, N. J., 2007, *Child Welfare: Policies and Best Practices*. CA: Thomson Brooks
- McGee, R. A., Wolfe, D. A., Yuen, S. A., Wilson, S. K., and Carnochan, J., 1995, "The measurement of maltreatment: A comparison of approaches", *Child Abuse and Neglect*, 19: 233-249.
- Mennen, F., Kim, K., Sang, J., and Trickett, P. K., 2010, "Child neglect in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s experi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34: 647-658.
- Rubin, A., and Babbie, E. R., 2005,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New York: Cengage.
- Russell, S. D., and Clifford, R., 1987, "Child abuse and neglect in North Carolina day care programs", *Journal of Policy, Practice, and Program*, 66(2): 149-163.
- Saunders, B. E., 2003,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356-376.
- Schumacher, R. B., and Carlson, R. S., 1999, "Variable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in daycare settings", *Child Abuse and Neglect*, 23(9): 891-898.
- Trickett, P. K., Mennen, F., Kim, K., and Sang, J., 2009, "Emotional abuse in a sample of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Issues of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3(1): 27-35.
- Trickett, P. K., Prindle, J., and Kim, K., 2011, "Variations in emotional abused and comparison gir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3): 498-521.
- Trocme, N., Knoke, D., Fallon, B., and MacLaurin, B., 2009, "Differentiating between substantiated, suspected, and unsubstantiated maltreatment in Canada", *Child Maltreatment*, 14: 4-16.
- US DHHS(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Child Maltreatment 2012*.
- Waterman, J., Kelly, R. J., Oliveri M. K., and McCord, J., 1993, *Behind the Playground Walls: Sexual Abuse in Preschools*. US: Guilford Press.
- Widom, C. S., Dutton, M. A., Czaja, S. J., and DuMont, K. A.,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instrument to assess lifetime trauma and victimization histo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519-531.
- Widom, C. S., and Morris, S., 1997, "Accuracy of adult recollections of childhood victimization: Part 2. Childhood sexual abuse", *Psychological Assessment*, 9: 34-46.
- Widom, C. S., and Shepard, R. L., 1996, "Accuracy of adult recollections of childhood victimization: Part 1.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ssessment*, 8: 412-421.
- Williams, L. M., 1994, "Recall of childhood trauma: A prospective study of women's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167-1176.
- Winegar, R. K., and Lipschitz, D. S., 1999, "Agreement between hospitalized adolescents' self-reports of maltreatment and witnessed home violence and clinicians records and medical records", *Comprehensive Psychiatry*, 40(5): 347-352.
- Wolock, J., Sherman, P., Feldman, L. H., and Metzger, B., 2001, "Child abuse and neglect referral patterns: a longitudi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4: 817-851.

Zuravin, S. I., Orme, J. G., and Hegar, R. L., 1995, "Disposition of child physical abuse reports: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est of a predictive model", *Child and Youth Service Review*, 17: 547-566.

##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Maltreatment at Day Care Centers and the Case Dispositions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Kim, Kihyun**

(Sungkyunkwan University)

**Jang, Hwajung**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im, Kyunghe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Jang, Heesu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cases which occurred recently at the Day Care Centers in Korea. The study utilized the case records system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CPS) and analyzed all the cases reported to the K-CPS from 2010 to 2012 (n=462). Using the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develop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Maltreatment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MCRAI; Trickett et al., 2009), the detailed information on abuse cases as well as disposition outcomes was abstracted. The results showed the relatively low rate of abuse designation, low rate of reports from the mandatory reporters as well as overwhelmingly high rate of physical abuse. Diversity was detected in severity ratings in each type of abuse. Finally, determinants of dispositions differed for children, perpetrators and daycare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child maltreatm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 Maltreatment in Day Care centers, Child Protective Services, Case Records Abstraction System, Child Care, Child Protective Services

[논문 접수일 : 14. 06. 29, 심사일 : 14. 07. 17, 게재 확정일 : 14. 09. 26]